

(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) 제정 주요 내용

1. 제정사유

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함

2. 주요 제정 내용

연번	구분	규정명	주요 제정 내용	비고
1	제정	대학 내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	<p>1. 등록 및 운행</p> <p>가.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의무화(제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 및 관리부서: 학생처, 교육지원처 <p>나.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(제9조에서 제1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행 속도는 25km/h 이하, 안전거리 확보, 보행자 보호 <p>2. 충전 및 주차</p> <p>가.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및 주차(제13조에서 제17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충전 및 주차공간 제공 및 주차 -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<p>3.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</p> <p>가.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(제18조에서 제2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주운전 금지, 과로 시 운전 금지, 난폭운전 금지 -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, 운전자 보험 가입 <p>안전헬멧 착용,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</p> <p>나.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</p> <p>4. 안전사고 및 제재조치(제24조에서 제26조)</p> <p>가.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</p> <p>나. 안전사고의 조사</p> <p>다.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 적발시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2주일 이용금지 - 2회 적발시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1개월 이용금지 - 3회 적발시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증 취소 <p>2. 별지 서식(1~3)</p> <p>[별지서식 1]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</p> <p>[별지서식 2]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서약서</p> <p>[별지서식 3]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보고서</p>	